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 등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56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정의 신설 및 육성·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제5호 및 제8조의2 신설)	2
2. 문화예술후원자 혜택 마련 책무 신설 및 우수기관인증 대상 확대 (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5. 20.

다. 회 부 일 : 2025. 5.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에 비해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이므로, 문화예술후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확대하거나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후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정의 신설 및 육성·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제5호 및 제8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5호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해당 시책에는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8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신설>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

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

	<u>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u> <u>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u> <u>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	---

다. 검토사항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예술후원법”)

제2조제4호¹⁾는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정의하고, 동법 제8조²⁾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³⁾란 문화예술후원의 매개·지원 업무,

- 1) 「문화예술후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질·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 2) 「문화예술후원법」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3)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문화예술후원 매개·지원 인력의 교육 및 양성,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 제5조4)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 조직·인력·정관 등의 요건5)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 4) 「문화예술후원법」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춘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춘 것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춘 것
-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인증하는 제도임.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동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인력 양성” 사업⁶⁾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열악한 상황 및 후속 조치 부족으로 매개인력의 양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의 인적 기반을 확대, 후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 기획, 무대 스태프 등 기존 문화예술 관련 인력의 양성에 비해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양성은 아직 미흡하므로, 법적·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6) 별첨 [참고 1] 참조

2. 문화예술후원자 혜택 마련 책무 신설 및 우수기관인증 대상 확대(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u><신 설></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u>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 ----- -----기업, 공익법인 등-----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문화예술후원법」 제3조⁷⁾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 대한 조세감면(동법 제9조⁸⁾), 포상(동법 제11조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¹⁰⁾(동법 제12조¹¹⁾)이 제도적 방안으로 마련·시행되고 있으나,

7) 「문화예술후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문화예술후원법」 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9) 「문화예술후원법」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화예술후원은 타 분야 대비 민간의 후원 유치가 취약하므로 문화예술후원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후원자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할 것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에 공익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후원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기업 외에도 기업이 출자한 문화재단 등 관련 공익법인은 전체 기업 문화예술 후원·지원 금액의 54.7%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적지 않으나¹²⁾, 「문화예술후원법」 및 동법 시행령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대상을 회사, 사업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¹³⁾하여 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10) 제도 운영 및 현황 관련 별첨 [참고 2] 참조

11) 「문화예술후원법」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한국메세나협회, ‘2023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13)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다만, 안 제12조제1항의 ‘공익법인’ 용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공익법인’ 용어가 개별 법률마다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공익법인을 법령에 명시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그 성격의 범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로, 공익법인의 정의 및 적용되는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익법인’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공익법인”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4)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필요¹⁵⁾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5) 문체부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 ----- <u>기업, 공익법인 등</u> ----- ----- ----- -----.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 ----- <u>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u>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2024년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인력양성 사업 실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 배경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년도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인력 양성의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추진
- 변화된 문화예술 후원환경에서 후원매개자를 새로운 직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목적

- 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가에 대한 인지도 제고
 - * 정부 선정 미래 유망 신직업 14개 직업군에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가”(구.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조명
- 문화예술후원매개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및 사후지원을 통한 후원매개 전문가로의 실질역량 제고

□ 주요 내용

구분	입문과정 (후원매개 의 이해)	심화과정 (후원매개 기획력 강화)	고도화 과정 (후원매개 활동인재 발굴)
교육목표	문화예술 후원매개에 대한 이해 및 후원매개자 인지도 제고	개인별 맞춤형 후원매개사업의 기획 및 개발전략, 분야별 컨설팅	후원매개전문가 활동 인재 발굴
개설회차	총 9회차	총 8회차	총 17회차
추진방식	온라인 녹화강의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학습공동체(CoP) 운영 / 오프라인 교육	후원매개프로젝트 실행 / 오프라인 실습

□ 주요 실적

- (수강 인원) 총 429명 (입문 329명, 심화 40명, 고도화 5명, 네트워킹 55명)
- (수료 인원) 총 226명 (입문 191명, 심화 30명, 고도화 5명)
- (참여 전문가 수) 총 29명 (강사 17명, 코치 12명)

참고 2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운영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인증목적

-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국내 문화예술 분야 후원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
- * 관련 근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4.1.) 및 시행(2014.7.)

□ 인증절차

인증신청	▶	평가	▶	인증심의	▶	결과발표
인증신청서, 최근 3개년 문화예술후원 (매개) 공적서 등 제출		현장평가단(3인*)의 신청단체 및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인터뷰 및 서류 평가 * 문화예술전문가, 회계사, 인증평가 전문가		평가 결과 및 인증 취소에 대한 최종 심의		인증 결과공고 및 인증식 개최

□ 인증혜택

포상추천	- 문체부 장관표창(2점) - 예술위 위원장표창(3점)
홍보	- 인증서, 인증패, 인증현판 제작 및 인증마크 활용 - 언론홍보 - 인증사례집 발간 및 배포
우대혜택	-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 전 임직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할인 혜택 -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유관 제도 우대	-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우선 선정 - 여가친화기업 인증 가산점 부여 - 독서경영우수직장 인증 가산점 부여
기타	- (매개단체) 문화예술 후원 매개 사업비 보조금 지원 - (우수기관) KB금리 우대혜택(중소,중견기업 한정)

□ 인증현황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합계
2024년	12	66	78
2023년	12	64	76
2022년	8	53	61
2021년	8	53	61
2020년	5	50	55
2019년	5	38	43
2018년	4	29	33
2017년	4	29	33
2016년	4	23	27
2015년	3	10	13

□ 사업목적

- 문화예술 분야 재원 다각화를 위한 민간기부금 모금 및 배분
- 문화예술 후원 인식 제고 및 매개인력 양성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후원 활성화 유도

□ 사업내용

- 기부금제도를 통한 기부금 사업
 - 민간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품 관련 모금 및 지원
 - 예술단체 정기후원 모금액량 강화 지원 및 크라우드펀딩 매칭 지원
- 예술나무운동
 - 문화예술분야 후원자 발굴 및 예우, 후원 참여 캠페인(예술나무운동) 개최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운영
 -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 민간후원활성화지원 사업
 - (예술지원매칭펀드) 예술단체에 대한 기업 후원금에 매칭 지원
 - (지역메세나확산) 지역 메세나단체*에 예술지원매칭펀드 매칭기금 배분 및 사업 공동운영 지원
 - * 경남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부산메세나협회, 세종시메세나협회, 대구메세나협회, 글로벌메세나협회, 대구
 - (문화로인사합시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구.문화접대비) 확산을 위한 지출 보전 지원(기업 대상)

□ 주요실적 및 성과

○ 기부금 모금 및 배분실적

<기부금사업 현황(2018년 ~ 2024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결산)
모 금	기부금 모금액	232억원	307억원	182억원	182억원	170억원	173억원	212억원
	기부금 모금 건수	17,784건	22,595건	22,342건	22,905건	29,661건	31,810건	36,360건
배 분	기부금 지원금	154억원	155억원	79억원	109억원	101억원	96억원	107억원
	기부금 지원 건수	438건	520건	382건	383건	475건	515건	430건

○ 예술후원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제고 및 예우 후원인 확대, 실질적 모금 성과 달성

-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행사 전후 예술후원 인식 상승(3.98→4.5점) 및 예술후원에 대한 긍정 인식(92.1%)
- 페스티벌 수익의 예술나무 후원액 증가 : '23년 136백만 원→'24년 164백만 원(전년대비 20% 증가)

○ 기업과예술의만남 예술지원매칭펀드 208건, 민간 후원금 3,108백만원 유치

□ 후원매개인력

○ (미국) 문화예술 기금모금가(Art Fundraiser)

- (배경) 기부문화가 성숙한 미국에서는 미국표준직업분류(SOC2010)에 세분류 직업 중 하나로 등재됨
- (직무) 기금 사용계획, 활용내역, 성과를 통해 기부금이 국가·사회·개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기부자의 지속적 동참을 유도함
- (현황) 통상 '펀드레이저'로 분류되나,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경우 ACO(Art Culture Organization) 펀드레이저라고 함. 기금모금가 활동인원 48,530명 중 문화예술 기금모금가는 7,000~8,000명으로 추산됨*

* 미국노동통계청(BLS)의 2012년 5월 OES데이터

○ (영국) 기금모금가(Fundraiser)

- (직무) 기업, 자치단체, 신탁 및 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 기부 캠페인 및 이벤트 계획 등
- (현황) 약 95,400명이 기금모금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5%는 예술/오락/레크리에이션 관련 근무처에 종사함

* 종교, 보조금 지급, 시민, 전문 및 유사 단체 43%, 교육 서비스, 주, 지역 및 개인 23%, 의료 및 사회 지원 16%, 예술, 오락, 레크리에이션 5%, 관리 및 지원 서비스 3%

□ 문화예술분야 후원

- (프랑스) 1987년 「메세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03년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 제정
- 개인 및 법인의 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공익재단의 세금감면, 공익재단의 설립 절차 완화 등 후원 활성화 정책 수행

- 국보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에 후원하는 총액의 90%를 세금에서 감면하고, '문화메세나상'을 통해 주목할 만한 문화 프로젝트를 후원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 **(미국)** 민간(개인) 후원문화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고, 세법 제 501조(c)(3)에 해당되는 단체로 인정되면 연방소득세 면세 지위를 얻게 되며 후원자들의 소득세(세법 제170조), 유산세(세법 제2106조), 증여세(세법 2522조) 공제
- **(영국)** 1976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A&B(Arts & Business)는 영국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기구인 예술위원회(Arts Council)와 함께 영국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적 지원 담당. 자선단체가 개인 및 민간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금액의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Gift Aid' 시행과 기초예술 분야 세금경감제도 시행